참고 **수출입폐기물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**

[수출입 폐기물 관리제도]

Q1 수출입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처리계획서의 양식 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?

▶ 처리계획서에 대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. 다만, 처리계획서 내에 연간 및 월간 처리량, 처리품명, 처리공정도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.

Q2 수입폐기물의 경우 결과서에 입력하여야 하는 배출자는 해외 폐기물 배출자 되나요? 아니면 국내 폐기물수입자로 하여도 무방한가요?

▶ 배출자는 통관절차 완료 후 국내로 반입하는 자이며, 수입자가 됩니다.

Q3 환경청에서 수출·경유국으로 수입동의만 하게 되면 폐기물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. 업체에서 환경청에 수입동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▶ **(우리나라에서는 제품, 수출국에서는 규제폐기물일 경우)**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통관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고, 수출국에서 수입동의요청 할 시, 대부분 청에서 국내에서는 제품으로 보고있어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품목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.

Q4 수입폐기물의 경우 원료로 바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인 경우 반드시 재활용환경성평가(비매체)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?

▶ 수입폐기물도 국내 반입 이후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재활용환경성평가도 대상이 된다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.

Q5 3자 거래 수입 시 모두 폐기물처리업이 등록되어있어야 하나요?

▶ 수입 시 무역업체는 국내 폐기물 취급자와 계약이 되어있어야합니다.
3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“모든 책임은 폐기물 취급자에게 있음” 의 문구를 기재해야합니다.

Q6	수입 폐기물 정의 및 세부구분

▶ **(수출입 규제폐기물)**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11조에 따른 양자간·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·수입 및 국내 경유(이하 "수출입등"이라 한다)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

(수출입 관리폐기물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 폐기물

(세부구분)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규칙 [별표4]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

Q7	시험분석에서의 분석항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항목으로 환경청의 수출입폐기물관리지침에서 말하고 있는데,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보니, 유역환경청 담당자별로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(용출 또는 함량, 용출/함량)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분석항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바젤협약 및 OECD에서의 위해성이 있는 항목들도 분석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

▶ **(수출 시)**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항목을 기본으로 하며, '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' 제한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청 판단하에 중금속에 대해 함량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기타 위해성 항목) 유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NDMS 등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 중입니다

[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]

Q8 봉인창치가 훼손이 되어 씰번호가 식별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 현장정보 등록 시 문제가 없나요?

▶ 봉인장치(씰번호)가 훼손되면 현장정보 등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 봉인장치가 훼손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관련 공무원이 요청 시 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Q9 적출검사 후 일반 카고차량으로 옮기어 운송되는 경우가 있는데, 현장정보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.

▶ 안정성 검사 후 적출된 화물은 일반 카고차량으로 운송할 수는 없습니다.
반드시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으로 현장정보(위치정보)를 전송하며 운송하셔야 합니다.

Q10 출발지와 도착지의 봉인장치, 주변사진상에 일자 및 시간(워터마크) 표시본으로 업로드 하여야 하는지?

▶ 사진을 워터마크 표시본으로 업로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Q11 (폐기물 수출) 사업장에서 항으로 이동 중 견인차가 변경되어도 되는지?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계서 수정 후, 진행하면 되는지?

▶ 컨테이너 운송차량 이동 중, 임의로 견인차 변경은 불가합니다.
다만 차량의 고장,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후 관련 공무원이 요청 시 제시 해야 하고 인계서의 차량번호는 즉시 변경하여 운송하셔야 합니다.

Q12 업로드 후 등록/수정 칸에 “수정기한 만료” 표기 시 오류인가요?

▶ 인계서 작성 후 공휴일 제외하고 2일이 지나면 수정기한이 만료가 됩니다.
오류는 아니고 수정기한의 만료를 뜻합니다.

Q13 수출 시 현장정보 전송내용은?

▶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경우,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전면부 및 후면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뜻합니다.

다만, 수출 시 진입로 영상정보는 수출하는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,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.

Q14 폐기물 수출 시 계근대 사용이 어려울 경우(공인계량서 설치 의무자이면서, 컨테이너 차량운반) 공인계근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인계근표 업로드 하는 방법은?

▶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는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폐기물 수출입할 때 마다 전송해야합니다.

다만, 사업장의 계량시설 여건 상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계량이 불가할 경우 「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의2(현장정보 전송방법 등)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외적 전송방법 인정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인계량소의 계량전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입력할 수 있습니다.

Q15 폐기물 수출입 시 컨테이너로 수출입이 진행되지만, 사업장 내 컨테이너 작업할 공간이 없으면 경유지 신고하여 CFS*나 항만에서 컨테이너 제품을 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으로 옮겨 이송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

▶ CFS*(컨테이너 보세장치장)에서 폐기물 적출하여 수집·운반차량으로 현장정보(위치정보)를 전송하고 사업장까지 운송하셔야 합니다.

* CFS :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

※ 인계서는 실제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·운반 차량으로 작성되어야 함